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363호

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·수입명령 및 유통개선 조치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2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·수입명령,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

#### 1. 제정이유

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특별법」 제18조 및 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·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 가. 긴급 생산·수입 명령의 통지(안 제3조)

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제조·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통지할 사항을 정함

- 나. 제조·수입업자의 생산·수입 계획 및 결과 보고(안 제4조, 제5조) 긴급 생산·수입 명령을 받은 위기대응 의료제품 제조·수입업자의 생산·수입 계획 및 결과 보고에 포함되는 세부사항과 제출 방법을 정함
- 다.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및 결과보고(안 제6조, 제7조) 유통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통지할 사항을 정하고,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의 결과 보고에 포함되는 세부사항과 제출 방법을 정함

### 3. 의견 제출

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·수입명령,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」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(우편번호: 28159, 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, 참조: 의약품정책과, 전화 043-719-2634, 팩스 043-719-260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기타 참고사항

####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000호

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8조 및 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·수입명령,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

2022년 8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·수입명령,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제18조 및 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·수 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"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"이란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2조제3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말한다.

- 제3조(긴급 생산·수입 명령의 통지)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 ·수입 명령을 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대상업체
  - 2. 대상제품
  - 3. 명령의 내용 및 사유
  - 4. 명령의 적용기간
  - 5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4조(제조·수입업자의 생산·수입 계획 보고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·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·수입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1. 업체정보(업체명, 소재지, 연락처, 업종, 허가번호 등)
  - 2. 제품정보(품목명, 허가번호 등)
  - 3. 명령의 적용기간 내 생산 또는 수입 가능량
  - 4. 명령의 적용기간 내 생산 또는 수입 예정량
  - 5. 명령의 적용기간 내 국내 판매 예정량
  - 6. 생산 또는 수입 증량을 위한 조치계획
  - 7. 그 밖에 긴급 생산·수입 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생산·수입 계획의 제출은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,「약사법」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및「의료기기법」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

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 제5조(제조·수입업자의 생산·수입 결과 보고) ① 제4조에 따른 생산·수입 계획을 제출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제조·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·수입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업체정보(업체명, 소재지, 연락처, 업종, 허가번호 등)
- 2. 제품정보(품목명, 허가번호 등)
- 3. 일일 생산 또는 수입량
- 4. 일일 판매량(국내/수출)
- 5. 재고량
- 6. 향후 일정별 생산·수입 계획
- 7. 그 밖에 긴급 생산·수입 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생산·수입 결과는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,「약사법」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 시스템 및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유통개선조치)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통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대상 업체
  - 2. 대상 제품
  - 3. 조치 내용 및 사유

- 4. 조치의 적용기간
- 5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(유통개선조치의 결과 보고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통 개선조치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통개선조치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업체정보(업체명, 소재지, 연락처, 업종, 허가번호 등)
  - 2. 제품정보(품목명, 허가번호 등)
  - 3. 유통개선조치별 이행사항
  - 4. 미이행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
  - 5. 그 밖에 유통개선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  -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,「약사법」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및「의료기기법」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- 제8조(관계부처 협의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 제품의 긴급 생산·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